

**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
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7. 2. 14.

나. 발 의 자: 김종두·표주숙·박희순·변상원·이홍희·강철우·최광열·
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7. 2. 1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2. 27.

2. 개정이유

-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여론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(안 제2조 제4항) 신설
 -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여론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 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 없음